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제15호”를 “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중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를 “보험중개업무”로, “집합투자업”을 “집합투자업, 역외금융회사 업무”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각각 4개 이하여서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1. 생명보험회사 : 10억원 이상

2. 손해보험회사 : 15억원 이상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 ----- ----- -----.
1. 외국에서 하는 사업(제3항제1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3항 각 <u>호</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u>보험수리업무</u> , <u>손해사정업무</u> , <u>보험대리업무</u> ,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u>집합투자업</u> 및 부동산업	15. ----- <u>보험중개업무</u> ----- ----- ----- ----- <u>집합투자업, 역외금융회사 업무</u>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	②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There are two small black dots located on one of the middle dashed lines, serving as starting points for writing practice.

1. (현행과 같음)
2. ----- 해약환급금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6. (생략) <u><신설></u> ② ~ ⑧ (생략)	----- ----- ----- ----- ----- -----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u>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u> <u>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u>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대통령령 제2588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생략) ② 삭제	부 칙 <대통령령 제25887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

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각각 4개 이하여서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1. 생명보험회사 : 10억원 이상
2. 손해보험회사 : 15억원 이상